



대구대학교-중앙경찰학교  
**경·학교류협정서**



대구대학교와 중앙경찰학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학술 및 경영·행정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,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·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협동을 통하여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·학 협동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정은 양 기관이 경찰실무와 관련한 학문적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학문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정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은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학술교류에 협력한다.
2. 양 기관은 개설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교환 강의에 협력한다.
3. 양 기관은 학술행사(세미나 등) 개최시 상호 초청 또는 공동 개최한다.
4. 양 기관은 보안 및 개인 저작권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일방의 요청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, 교육교재, 장비, 연구자료 등을 적극 지원한다.
5. 기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협력한다.

제3조 (방법) 본 협정은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,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

제4조 (비용부담) 본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효력)

1.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·해지 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총장과 중앙경찰학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본 내용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. 6. 4.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중앙경찰학교  
Central Police Academy

학교장 치안감 박진현

박진현

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